

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운영위원회(2015. 7. 2)

규칙안 검토 보고서

운 영 위 원 회

[전문위원 이 규 섭]

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5. 6. 19.
- 나. 발 의 자 : 이성복 의원 외 10인
- 다. 회부일자 : 2015. 6. 19.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“議” 자를 한글인 “의회” 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,
- 용어 순화와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의회기 및 배지 한자 도안을 한글로 변경 (안 제3조)
 - “議” → “의회”
- 일본어식 용어 순화 및 배지 이면의 번호 조각 삭제 (안 제5,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기존예산 활용)
- 다.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 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“議”자를 한글인“의회”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 고취와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 용어 순화와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, 상위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